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72
----------	------

발의연월일 : 2017. 6. 29.

발의자 : 김진태 · 정갑윤 · 이현재  
윤상직 · 송희경 · 여상규  
엄용수 · 강효상 · 유민봉  
나경원 · 김성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출국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는 연장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자장치 부착 상태를 전제로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한 경우는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나 전자장치가 출국 허가, 폐쇄병동 입원 등 적법하게 분리되었으나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부착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석상으로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포함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전자장치 분리 등 직접적 효용침해를 한 기간과 마찬가지로 부착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기간이므로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연장사유로 명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및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 의무를 불이행한 기간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제3호)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 나.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안 제32조제2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일시 분리 후 재부착을 위한 소환 불응으로 인한 미부착 기간을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로 추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를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기간,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입국하지 아니한 기간

3.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부착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못한 기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u>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u>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u>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u>
② (생략)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그의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간은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  
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  
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기간,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출국허가 기간을 도  
과하여 입국하지 아니한 기간

3.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  
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  
로 분리된 후 피부착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재부착을 위  
한 소환에 불응하여 전자장치  
를 부착하지 못한 기간